

■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4. 3. 22.>

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 (제7조제2항 관련)

1. 어업용 화물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,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.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)
2. 어업용 경운기
3. 어업용 트랙터
4. 어업용 크레인
5. 패류선별기
6. 어망 세척기